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호 관련 1645

제안년월일 : 2017년 6월 20일

제 안 자: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「항공안전법」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무인 동력비행장치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에 드론을 통한 공간정보 서비스 사업을 포함하여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조례안의 제명과 문구 중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수정함(안 제1조 등)
- 나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"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 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"을 신설함(안 제5조 제2항)

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안의 제명을 "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"에서 "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"으로 한다.

안 제1조 중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2조제2호의 "무인비행장치 산업"을 "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"으로 하고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하며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"무인동력비행장치"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.

안 제3조 중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4조의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5조의 조명과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 동력비행장치"로 하고 제5조제2항제9호를 제5조제2항제10호로 하며 제5조 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9.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조명과 제6조제1항부터 제6조제4항까지 "무인비행장치"를 각 각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7조 조명과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 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8조의 조명과 본문에서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9조 본문의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10조 제1항에서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안 제11조의 본문에서 "무인비행장치"를 "무인동력비행장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수 정 안 워 안 서울특별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무인비 제1조(목적) ------ 무인 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동력비행장치 -----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무인비행장치"란 사람이 탑승하지 1. "무인동력비행장치"라 연료의 중량 않고 원격 ·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 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 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 기로써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 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멀티콥터를 말한다. 무인회전익 비행장치를 말한다. 2. "무인비행장치 산업"이란 무인비행 2. "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"---인동력비행장치-----. 장치를 제작 · 운용하기 위한 산업, 무인 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<u>인동력비행장치</u>-----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무인비행장치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무인동력비행 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른다.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----- <u>무인동력비</u>행장치 ---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 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 ② ----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----- <u>무인</u> ②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비 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 동력비행장치 ----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③ ----- 무인동력비행장치 ----③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제5조(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 등) 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육성을 립 등) ① ----- 무인동력비행장치 ---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· 시행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무인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

1. 무인동력비행장치 -----

0) .)	·
원 안	수 정 안
방향에 관한 사항 2.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	 2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3. <u>무인비행장치</u> 사업자의 창업·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	3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4.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행사·기술개발·연 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	4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5.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 변확대에 관한 사항	5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6.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 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	6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7. <u>무인비행장치</u>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 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	7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8. <u>무인비행장치</u> 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	8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<u><신설></u>	9.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<u>10.</u>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 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	③ (원안과 같음)
제6조(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 육성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<u>무</u> 인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공공기관, 대학,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.	제6조(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 <u>무인동력비</u>)① <u>무인동력비</u> <u>행장치</u>
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의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	②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③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종사자의 <u>무</u> 인비행장치 개발·운용과 관련된 분쟁해 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	③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 무 <u>인동력비행장치</u>
④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 관련 연구, 산업 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④ 시장은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
6)	റി
74	~

- 제7조(<u>무인비행장치</u> 저변확대) ①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
- 2. <u>무인비행장치</u>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
- 3. 그 밖에 시장이 <u>무인비행장치</u>의 저변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의 경진대회, 교육,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,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<u>무인비행장치</u>의 실증단지 조성)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의 기술의 시범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안전교육)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의 조 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<u>무인비행장치</u>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 을 위한 교육
- 2.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한 교육
- 3.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교육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<u>무인비행장치</u>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 상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1조(포상) 시장은 <u>무인비행장치</u> 연구,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개인·공무원·단체·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수 정 안

· · · ·
제7조(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) ①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1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 2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 3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②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 .
제8조(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)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 .
제9조(안전교육) <u>무인동력비행장</u> <u>치</u>
 1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2.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
3. (원안과 같음)
제10조(실태조사) ① <u>무인동력비행</u> <u>장치</u> <u>무인</u>
<u> </u>
 ② (원안과 같음)
제11조(포상) <u>무인동력비행장치</u> ,
 제12조(시행규칙) (원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무인동력비행장치" 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를 말한다.
- 2. "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"이란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제작·운용하기 위한 산업,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무인동력비행장치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.
-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운용과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· 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제5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 업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

- 3. 무인동력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- 4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5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
- 6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
- 7. 무인동력비행장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
- 8.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
- 9.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가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6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등)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 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을 국가기관, 정부출연 연구기관, 공 공기관, 대학,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사업 참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
- ③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의 무인동력비행장치 개발・운용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하여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연구,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무인동력비행장치 저변확대)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무인동력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
- 2. 무인동력비행장치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

- 3. 그 밖에 시장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②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경진대회, 교육,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,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,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실증단지 조성)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기술의 시범 적용 및 실증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9조(안전교육)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조정자 및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 - 1.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정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
- 2.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
- 3.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- 제10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관련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・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11조(포상) 시장은 무인동력비행장치 연구,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·공무원·단체·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